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

제출년월일 : 1999년 12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함

주요골자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여 감면토록 함

조 례(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5세대”를 “2세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취)
- 임대주택법 (부분발취)
- 임대주택법시행령 (부분발취)
- 행정자치부(안) 사본

관련법규(부분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2세대를 말함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②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문 99.11.8 00

“세입형역 밀알되어 극복되는 경제위기”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77-6종합청사1412호/전화3703-5059(행)5059/전송3703-5552
 세제과 과장 김대영 사무관 김한기 담당자 강필

문서번호 세제13410-1018

시행일자 1999. 11. 8.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세정·세무·지방세과장

선발부과장	김대영	지시	
접일자	1999. 11. 08	결재	
수번호	2142	공람	
처리과	세정세무과	심사일	
담당자			
심사자			

제목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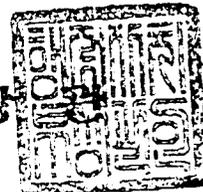
1.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도)세감면조례개정(안), 구세감면조례개정(안) 및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2.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행 정 자 치 부 장

전결 세제과장 김대영



수신처 나(01~07, 10~18)

○○특별시(광역시·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특별시(광역시·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
하는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	-----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	-----
분의 25를 경감한다.(단서생략)	--.(단서 현행과 같음)
1.~4.(생략)	1.~4.(현행과 같음)